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대구지방검찰청
상주시청**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정호
전화 054-530-4303

보 도 자 료
2024. 1. 23.(화)

제 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

- 오늘(1. 23.)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시청(지청장 김상현)은 '24. 4. 10.(수)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「유관기관 대책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긴밀히 협력하여 ▲당선·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, ▲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▲선거 관련 금품수수, ▲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시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 회의 개요

- 일시, 장소: 2024. 1. 23.(화) 14:00,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시청
- 참석자 (총 16명)
 - 검찰(4명): 전담검사 및 수사관
 - 선관위(6명): 상주·문경·예천선관위 지도계장 및 주무관
 - 경찰: 상주·문경·예천경찰서 지능팀장 및 수사과장

2 주요 회의 내용

○ 「중점 단속대상 범죄」에 대한 엄정대응

- ‘선거 관련 폭력행위,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선거 관련 금품수수, 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’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하여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
중점 단속대상 범죄
○ 선거 관련 폭력행위 : ▲ 후보자, 선거사무장, 연설원,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·협박 ▲ 선거 관련 공무원·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·협박 ▲ 당내경선 관련 폭행·협박 ▲ 벽보·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
○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: ▲ 생성형AI기술,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▲ SNS상 가짜뉴스,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▲ 허위사실공표 ▲ 후보자 비방 ▲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
○ 선거 관련 금품수수 : ▲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▲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▲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·요구 등
○ 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 : ▲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▲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▲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

○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

-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,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협력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.
- 특히, 검찰과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 제7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·교환하고,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·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○ 적법절차 철저 준수 및 공정성 확보

- 단속 및 수사全过程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

중립을 유지하여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,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3 향후 계획

- 상주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,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. 10. 10.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.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☑

선거사범 신고센터

- ▶ 검찰 : 국번 없이 1301, 야간 (063) 570-4290
- ▶ 선관위 : 국번 없이 1390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nec.go.kr> (국민참여소통)
- ▶ 경찰 : 국번 없이 112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police.go.kr> (국민신문고민원)